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728
----------	-----

2022. 4. 2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13.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 4.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4.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립개요

- 대상지역 : 남양주시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 중 개발가능지
- 면적 : 55.12km²
- 정비유형 :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보전형 및 자연관리형
- 수립기준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향후추진계획

- '22. 04. : 시의회 의견청취
- '22. 05. ~ 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2. 07. : 도시계획조례 입안
- '22. 08. :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구)

-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의거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당해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남양주시 유보용도(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및 보전용도(생산녹지,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및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정비유형에 맞게 건축물 용도제한을 두어 체계화된 개발 계획을 유도하고, 토지의 기반시설 편입여부, 허용용도 등 권장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 제공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반시설 편입 제척부지에 대한 토지주(건축주) 및 이해관계인의 기반시설 조속 설치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집행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부.